
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7.23.(금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엽(02-2100-2960)	담 당 자	김 기 훈 사무관 (02-2100-2962) 김 경 찬 사무관 (02-2100-2964)		

제 목 : 앞으로 전화,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.

- 「보험업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(‘21.7.23) 통과 -

1 개 요

- ☐ 2021년 7월 23일, 비대면 방식(전화·통신수단)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「보험업법」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- 개정안은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(‘21.1.27일)하였으며 정무위 의결(7.1일), 법사위 의결(7.22일)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.

2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

- ☐ **[기존]**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에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습니다.
-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했습니다.
- ☐ **[개선]**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- 다만,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.

- ☐ **[기대효과]**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*를 반영하는 한편,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* 통신수단을 이용한 손해보험계약 체결 비중은 지속 증가중('16: 12% → '20: 15.7%)

3

향후 일정

- ☐ 이번에 개정된 「보험업법」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는 법 시행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*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.

* (예) 중도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감소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 방지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현행	개정안
제96조(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·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 항) ① (생략)	제96조(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·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 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 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(<u>보험계 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 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</u>)	3. ----- ----- <u>보험계 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 정한다</u> ---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